

의안번호	2216400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6.4.1.
추계번호	26C049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를 증원하고 의료사고심의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9억 9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임원 및 임기 (안 제10조)	194	200	207	213	220	1,034	207
의료사고심의회 (안 제53조)	375	375	375	375	375	1,875	375
합 계	569	575	582	588	595	2,909	5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의3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임원 및 임기)	-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 -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제3항) -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제4항)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의무규정
4	안 제18조의2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0조 (조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5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제1항)	의무규정
		○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 감정단은 단장 및 300명 이상 1000명 이내의 감정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26조 (감정부)	○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교 육을 하여야 한다.(제11항)	의무규정
8	안 제27조 (조정 신청)	○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 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며, 조정신청서를 송 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신청에 응한 것으로 본다. 피신 청인이 해당 기간 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 를 통지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제8 항) ○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 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 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제9항) 3.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인 경우(신설) － 자동개시 확대	재량규정
9	안 제46조 (의료분쟁 조정·중재 움 부즈만의 운영)	○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움부즈만(이하 “움부즈만”이라 한다)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10	안 제47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 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 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 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47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 다만, 필수의료행위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고액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11	안 제49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53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제1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 위원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3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 심의위원회는 의료사고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과목별 또는 의료분야별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의료사고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를 준용한다.(제8항)	의무규정
13	안 제54조 (사무국)	○ 제5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의료사고 예방·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현재 의료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인력과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사업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
2	안 제5조의3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의 방식, 유형 및 규모 등을 현시점에 가정하기 어려움
3	안 제10조(임원 및 임기)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4	안 제18조의2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유형, 규모, 수요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20조 (조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7조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자동개시 범위 확대에 따라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의 정원을 증원할 경우, 위원 회의 수당, 인력풀 관리 및 교육을 위한 중재원 인건비·사업비 등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사업량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6	안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7	안 제26조(감정부)		
8	안 제27조 (조정의 신청)		
9	안 제46조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의 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현재 중재원이 수행하고 있는 ombudsman 및 책임보험 관련 업무가 확대되어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사업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2026년 기준 국민 ombudsman 운영비 4,000만원 편성 － 또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2026년 기준 82억 3,900만원)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필수의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사업 법제화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10	안 제47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11	안 제49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건수와 유형별 보상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보상 대상과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과목 단위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와 관련된 접수 건수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2	안 제53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13	안 제54조(사무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추계가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①임원 및 임기(안 제10조), ②의료사고심의위원회(안 제53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출자료와 현행 사업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명시하였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나, 본 추계는 위원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임원 및 임기(안 제10조)
 - 개정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각각 1명씩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상임이사 인건비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의 합으로 추계함
 - (상임이사 인건비) 중재원이 제출한 2027년 기준 상임이사 인건비 1억 9,200만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관부담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임
 - (비상임이사 수당) 중재원 이사회 회의수당 30만원에 연간 이사회 개최 건수 6회를 곱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수당과 회의 개최 횟수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총 10억 3,3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상임이사인건비	192.0	198.3	204.7	211.4	218.3	1,024.7	204.9
비상임이사수당	1.8	1.8	1.8	1.8	1.8	9.0	1.8
합 계	193.8	200.1	206.5	213.2	220.1	1,033.7	206.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의료사고심의위원회(안 제53조)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민간위원에서 지급하는 회의비를 추계하고, 위원회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회의비는 위원 수에 회의 횟수 및 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중재원 산하 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위원회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별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원회 정원)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정원 20인 중 17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당 5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수당) 중재원 제출 자료에 따라 회의비 30만원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 심의위원회와 전문과목별 또는 의료분야별 조사위원회를 포함

하여 1년에 총 250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중재원에 따르면, 연평균 750건¹⁾의 의료사고가 형사입건되고 있으며, 회의 1회 당 3건의 의료사고를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 결과,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총 18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3]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안 제53조)	375	375	375	375	375	1,875	3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1) 2019~2023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결과 참고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